

69-1-~~10~~  
44

보통공  
(관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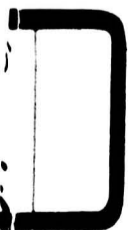
# 중화민국의 대륙광복설계에 관한 고찰(Ⅰ)

—대륙광복설계연구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토통일원

1969. 8

국토통일원



## 목 차

서 론 .....	1
제 1 장 대륙광복에 관한 기본정책 .....	2
제 1 절 중화민국 국민혁명의 역사적 발전 .....	2
제 2 절 국민혁명의 의의 .....	3
제 3 절 국민혁명의 정략(政略) 과 전략(戰略) .....	4
제 4 절 정략운영의 주체와 그 대상 .....	8
제 2 장 대륙광복설계연구위원회 .....	11
○ 제 1 절 임무 및 조직 .....	11
제 2 절 연구사업 .....	15
제 3 절 단계별 방안연구 내용 .....	18
제 4 절 연구성과 .....	50
제 3 장 중화민국 대륙광복의 당면문제 .....	53
제 1 절 중화민국 대륙수복에 대한 미국의 태도와 그 대비책 .....	54
제 2 절 소련의 대아시아 정책에 대한 중화민국의 자세 .....	57
제 3 절 아시아지역의 대공방위체제 형성의 구상 .....	59

## 서 론

중화민국 정부는 1949년 대만으로 천도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20여년간 대륙 수복과 대공방위전선에 앞장서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1954년에 이르러서는 대륙 수복에 관한 연구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대륙 수복에 관한 방안과 제반 대비책 및 수복후의 국가재건의 관한 제 문제를 연구 발전시키고 있다.

이곳에서 자유중국의 대륙광복 기본정책과 당면한 제 문제를 검토하고 대륙수복 추진전담기구인 「대륙광복실제연구위원회」의 현황 및 연구활동사항을 고찰하여 한국이 택할 방향과 통일정책수립에 참고코져 한다.

- 따라서
1. 어떠한 기본정책하에
  2. 어떠한 정략과 기구를 가지고
  3. 어떠한 내용으로
  4. 어떻게 연구하였으며
  5. 지금 어떠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가를 고찰하여 보기로 하였다.

## 제 1 장 대륙 광복에 관한 기본정책

### 제 1 절 중화민국 국민혁명의 역사적 발전

중화민국은 1892년부터 시작된 혁명사의 발전을 그 성분에 따라 3기로 구분하고 있다. 제 1기는 1892년부터 1911년까지 계속되었던 지식층이 주동이 되어 만청(滿淸)을 대상으로 한 정치혁명이고, 제 2기는 1911년부터 1945년까지 계속되었던 군벌을 대상으로 한 민족혁명이며, 제 3기는 1945년부터를 말하는데 이 혁명은 중공 모택동을 대상으로 하는 민권혁명으로서 이 혁명의 목표는 전 국토에 삼민주의 신중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제 3기 혁명의 완성과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민족분화를 부흥시켜 대만을 기지로 건설하고
2. 모택동을 타도한후
3. 정당, 계급, 종교, 종족, 원한관계를 초월한 세계세력과의 협상을 통하여
4. 보통선거를 실시
5.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6. 헌법을 수정하여
7. 신정부를 수립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 제 2 절 제 3 기 국민혁명의 의의

1949년 「정치협상」 및 「4계급 연합정치」(노동자계급, 농민계급, 소자본계급, 민족자본계급)를 내세우고 출발한 모택동정권은 1950년에서 1952년 사이에 「교육개혁안」을 통과시켜, 각 학교를 공산당 간부훈련 장소로 만들어 「사상개조운동」을 시작하였고 1955년에는 「전국 인민대회」에서 「무산계급전제정치」를 선포하여 국민의 모든 기본권리를 박탈하였는가 하면 1958년에는 「인민공사」를 조직하여 국민을 노예화하였으며 최근에는 중국의 전통적인 문화와 윤리도덕관념을 공산주의 운동을 추진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로 보고 「문화대혁명」이란 구호하에 중국고유의 문화를 소멸시키고 있을뿐 아니라 아시아의 주도권과 세계의 공산화를 목적으로 아시아 제국에 위협을 주어 세계평화를 파괴하고 있다.

이러한 공산집단을 대상으로 반공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실로 중화민국의 구국·구민의 전쟁이자, 민족의 존망과 고유문화의 존속을 위한 것이며 한거름 나아가 아시아의 안위와 세계 인류의 평화와 관계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중화민국이 반공전선에서 실패한다면 이것은 중화민족역사의 중단과 중국대륙에 암흑시대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아시아 및 세계의 안전과 평화에도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다.

### 제 3 절 제 3 기 국민혁명의 정략 (政略) 과 전략 (戰略)

정략과 전략의 운영과 그 임무는 다르다. 정략은 군중의 마음을 쟁취하는 정치전의 최고 지도원칙이며 전략은 토지를 쟁취하는 군사전의 최고 지도원칙이다.

중화민국은 대륙수복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정치 7, 군사 3의 비중으로 정치적 공세와 군사적 공세를 취하고 있다.

#### 1. 정략 (정치적 공세)

정략은 어떤 일단계 정치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자 단계별 실시의 정치적 수단이며 전반적인 방안을 가진 정치 방법이다. 그러므로 중화민국이 취하고 있는 정략을 목표, 단계 및 방안으로 분류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 가. 목 표

중화민국 헌법 제 1 조에 「중화민국은 삼민주의에 입각한 민유 (民有), 민치 (民治), 민향 (民享) 의 민주 공화국이다」라 하여 중화민국은 온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국가이자, 온 국민이 다스릴 수 있는 국가이며, 온 국민이 물질생활과 정신생활에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국가임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중화민국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 제 1. 목표 (대만건설)

- (1) 삼민주의 실현으로 대만을 모범성 (省) 으로 만든다.

- (2) 삼민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전지정무 (戰地政務) 를 실시하여 지방자치의 여건을 이룩한다.
- (3) 공산당의 조직과 공산여독을 철저히 제거하여 삼민주의 실현을 관철한다.
- (4) 현대 생활의 기초를 확립하여 공산당의 화를 예방한다.

#### 제 2 목표 (신정부수립)

- (1) 본토에 삼민주의를 실현한다.
- (2) 민족의 독립과 민권의 평등과 민생의 향락을 이룩한다.
- (3) 인재를 배양하고 교육수준을 향상시켜 현대사회를 건설한다.

#### 제 3 목표 (대동세계 건설)

- (1) 세계에 삼민주의를 널리 전파시킨다.
- (2) 전 인류의 자유·평화와 복지를 보장한다.

이상에서 중화민국 정략의 제 1 목표는 대륙수복에 필요한 기지건설이고, 제 2 목표는 대륙수복후 신정부수립이며, 제 3 목표는 대동세계 건설임을 알 수 있다.

#### 나. 단 계

중화민국은 상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군정 (軍政), 훈정 (訓政), 및 헌정 (憲政) 의 삼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제 1 단계 (군정)

군정단계에서는 군법을 실시하여 혁명의 모든 장애를 제거한다.

##### 제 2 단계 (훈정)

훈정단계에서는 임시조치법을 실시하여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한편 4권 (선거권, 파면권, 창작권, 재심권) 행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제 3 단계 (헌정)

헌정단계에서는 헌법을 실시하여 국민대회를 개최 새 정부를 수립한다.

그러나 현 중화민국 정부는 이러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군정, 훈정, 헌정을 동시에 병행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헌정이 1947년에 이미 실시되었으나 1949년 모택동의 반란으로 정부가 대만성으로 천도하게 되자 헌정을 보호할 군정과 훈정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 중화민국은 헌정도 아니며 군정도 아닌 준 비상상태로 대륙 수복을 위한 반공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 다. 방 안

중화민국의 건설방안은 국가건설과 전 국민권리의 필요에 따라 4차의 변화가 있었다. 제 1차는 1948년 항일전쟁 당시로서 그 내용은

- (1) 심리건설
- (2) 물질건설
- (3) 사회건설
- (4) 정치건설
- (5) 부력건설

등 5개방안으로 되었으며 :

제 2차는 제 3기 국민혁명 단계에 돌입할 시기로서 상기 5개방



안을 재조정하여

- (1) 정치의 현대화
- (2) 경제의 현대화
- (3) 교육의 현대화
- (4) 사회와 생활의 현대화

등 방안으로 바꾸었다.

제 3차는 1963년에 있었던 바 그 내용은

- (1) 정치의 현대화로 유능한 헌정체제 확립
- (2) 경제의 현대화로 민생문제 해결
- (3) 사회와 생활의 현대화로 신생활 실시
- (4) 교육의 현대화로 삼민주의 문화건설
- (5) 국방의 현대화로 민생과 국방이 일치된 군사건설등 5개방안으로 되었다.

제 4차는 1967년 아주의 정세 및 대륙정세의 변화에 따라 상기 5개방안을 하기 4개방안으로 조정 변경하였는 바 그 방안은 최근에 가장 완비된 방안으로써 그 내용은 :

- (1) 윤리건설
- (2) 심리건설
- (3) 물질건설
- (4) 정치건설

등 4개방안으로 되었다. 그 특색은 「사람」(人), 「마음」(心), 건설에 치중한 것이며, 사회건설은 정치건설에 포함시키고 있다.

## 2. 전략 (군사적 공세)

반공전략은 자료관계로 자세히 설명할 수 없으나, 1959년 및 1960년 년두교서에 나타난 방침을 종합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대륙을 본 전쟁터로 하고 대만해협을 지원하는 전쟁터로 하여 내외 협공을 시도한다.

나. 적의 무기와 식량을 탈취하여 무기는 적을 소멸시키는 무기로 사용하고 식량은 반공작전의 식량으로 충당한다.

다. 적의 창고와 철도, 공로의 교량을 파괴하고 전선, 전주를 절단하여 적의 교통과 통신기구를 제거 적군의 행동을 마비시켜 적의 전략을 약화시킨다.

라. 사상자를 적게 내고 적의 사격거리내의 작전을 피하기 위하여 적과 접근전을 시도한다.

### 제 4 절 전략운영의 주체와 그 대상

#### 1. 전략운영의 주체

중화민국의 모든 전략은 당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략의 주체인 국민당의 성격을 고찰하여 전략운영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 중화민국 국민당은 혁명역량을 집결한 조직이다.

중화민국은 넓은 국토와 많은 인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교육수준과 민도가 아직도 저급한 관계로 온 국민이 삼민주

의와 혁명의 원리를 이해한 후에 혁명대열에 참가하려면 몇년이 걸릴지 모른다. 그러므로 먼저 혁명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능력이 있는 동지들이 집결한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혁명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둘째 : 중화민국 국민당은 혁명주의를 실행하는 기초이다.

국민당은 명확한 이념을 가지고 이 이념을 실행하고 있다. 이념이 없으면 당의 조직이 있을 수 없고, 당이 없으면 이념을 실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당이 없으면 혁명을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 2. 정략의 대상

국민당은 정략을 실현함에 있어서 정치 의식을 가진 정당, 사회단체 및 비조직적인 일반 군중을 대상으로 하여 연합전선과 외곽조직을 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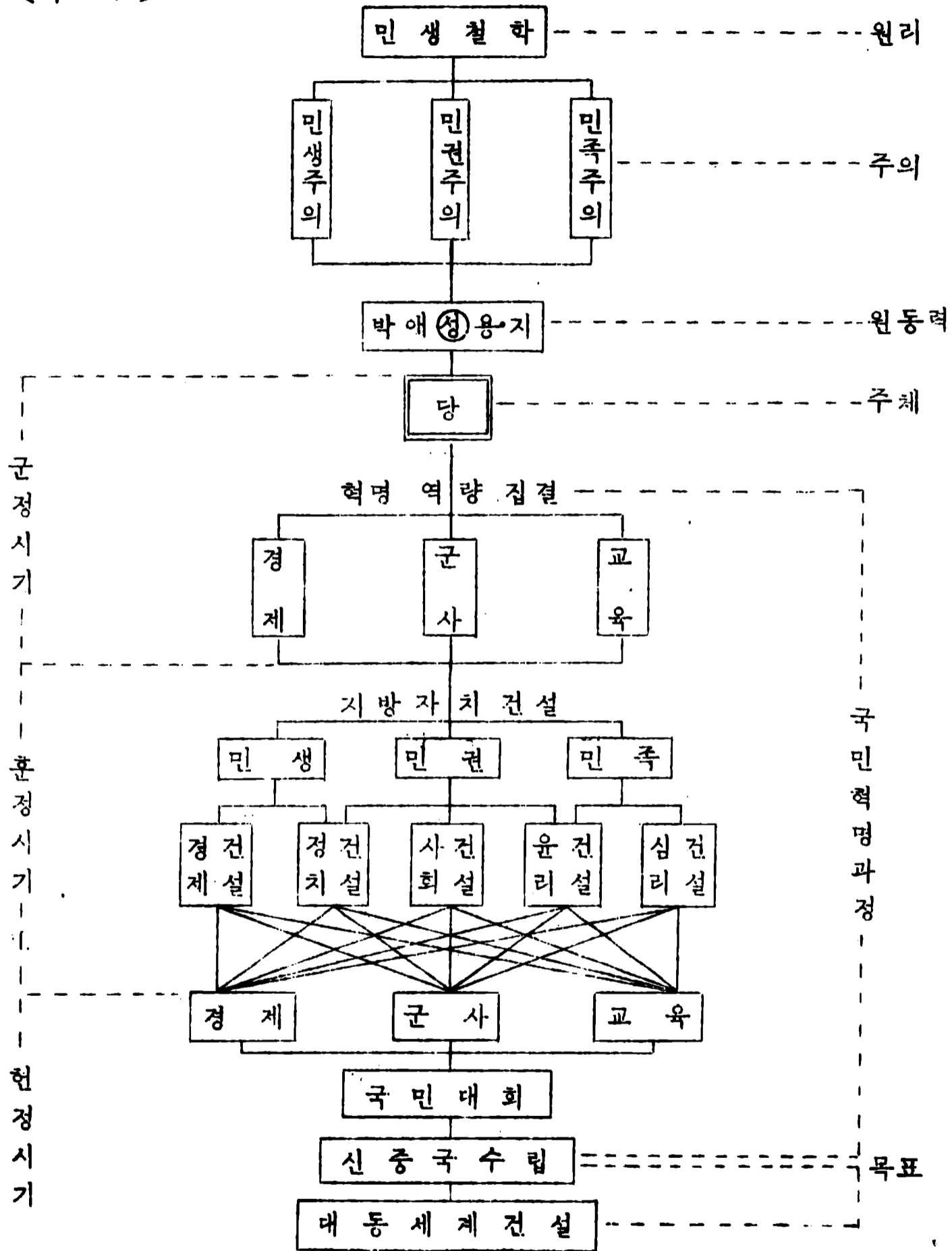
정당 및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합전선은 정당 및 사회단체 대표인사들의 정치적 양해와 합작으로 전 민족의 단결을 환기시켜, 구국과 건국을 위하여 공동으로 투쟁한다는 정치전의 의의와, 비협조적인 인사의 소외의식을 제거시켜 군중과 접촉할 수 있는 진로를 개척하여 주는 조직전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비조직적인 군중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외곽조직은 당원 흡수와 흡수된 당원의 피동적인 태도를 주동적으로 유도하는데 의의가 있다. 단, 외곽조직을 구성할시 어떠한 조직을 가지고 그들대로의 강령과 지도자를 내놓을 수 있으나 이때의 조건은 국민당의 명에

손상과, 반공의 國是 (宗旨) 를 위배해서는 않된다.

이상에서 고찰한 내용을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부표1참조]

[부표1]



## 제 2 장 대륙광복설계연구위원회

### 제 1 절 임무 및 조직

○ 1954년 3월에 개최된 제 1회 국민대회에서 총통부 산하에 대륙광복의 추진체로서의 전담기구를 설치하자는 안이 채택되어 이를 정부에 건의 하였다. 따라서 종전의 행정설계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해체 보장하여 본 조직을 법제화하기로 결정을 보았다.

이어 동년 11월 1일 대륙광복설계연구위원회는 총통 직할기관으로 설치되었고, 고 진성부총통을 초대 주임위원으로 겸임시켰다. 총통은 동위원회의 설치 취지 및 목적에 대한 창립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시를 통하여 그 방향을 명시한 바 있다. 즉

『본 위원회의 임무는 여하히 중공의 폭정을 타도하고 도탄에 빠져 있는 대륙동포를 구제하여 진정한 자유를 쟁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연구하는데 있다』 이러한 총통의 유시에 따라 동위원회의 위원은 제 1회 국민대표, 행정원 소속의 설계위원 및 대륙광복업무에 관계되는 인사로 구성하였는 바 기구설치 당시의 위원은 1883인이었으나 현재 위원은 국민대표 1426인과 비국민대표 206인 총 1635인 (1969년 7월현재) 으로서 범국민적인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동위원회는 주임위원 1인 (설악), 부주임 4인 (장지본, 좌순생, 증보손, 우빈) 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국에 해당하는 비서처의 행정체제는 비서장 1인 (곽기), 부비서장 2인과 그 보조 기관으로,

실 (室) 및 조 (組) 로 편성되어 해당사항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당 부서별 임무와 기능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비서실 : 원고심사, 전문번역 및 의전에 관한 사항 일체

제 1 조 : 문서, 출납, 경상업무 및 기타에 관한 사항

제 2 조 : 방안연구 추진 및 각종 회의계획과 기록에 관한 사항

제 3 조 : 자료수집, 제공, 보관, 번역, 출판에 관한 사항

안전실 : 보안업무 취급

주계실 : 회계 및 통계에 관한 사항

인사실 : 사무직원 및 위원서무에 관한 사항

편집위원회 : 동 위원회는 학자와 전문가로 구성 다음 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1) 연구제목의 계획

(2) 각종 방안의 심의 및 정리

(3) 연구방법 규정

(4) 완성된 각종 연구방안 심의

(5) 종합연구조에서 심의한 의견에 따라 방안을 재조정

(6) 사회인사의 방안제시처리

(7) 심의사항 상신

그리고 동위원회는 효율적인 연구성과를 얻기 위하여 특이한 연구체계 및 방법을 택하고 있다. 다음은 이를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그 체계 및 방법은 집단연구와 공통의 결론에 도달키 위하여

연구구 (研究區), 연구조 (研究組) 의 연구방법을 채택하여 대북연구구 (台北研究區), 대중연구구 (台中研究區), 대남연구구 (台南研究區) 의 3개 연구구로 나누어 위원의 거주지에 따라 가까운 연구구에 배속되어 연구실시하고 있다.

이를 각 연구구역별로 보면 대북시 (台北市) 대북현 (台北縣),基隆시 (基隆市), 의란현 (宜蘭縣), 도원현 (桃園縣), 신죽현 (新竹縣), 에 거주하는 위원은 대북 연구구에 참가하고 있으며, 대중시 (台中市), 대중현 (台中縣), 묘를현 (苗栗縣), 남투현 (南投縣), 창화현 (彰化縣) 에 거주하는 위원은 대중 연구구에 소속되어 있고, 대남시 (台南市) 대남현 (台南縣) 고웅시 (高雄市) 고웅현 (高雄縣) 병둥현 (屏東縣) 가의현 (嘉義縣) 운림현 (雲林縣) 에 거주하는 위원은 대남 연구소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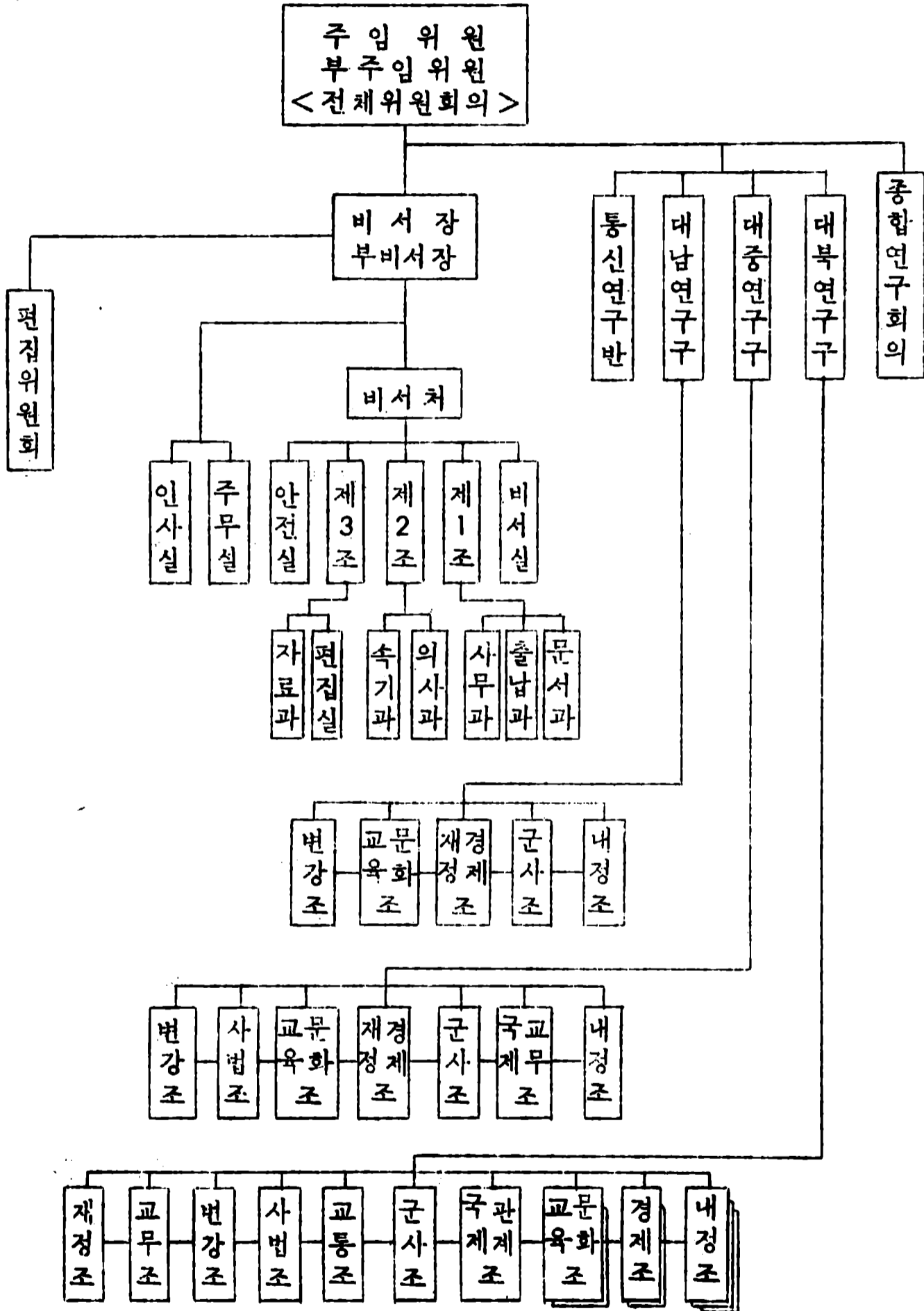
또한 해외와 대동 (台東) 화련 (花蓮) 팽호 (澎湖) 및 금문 (金門) 마조 (馬祖) 지구의 위원은 위원수가 적고 집회가 불편하여 자유중국 특이의 통신 연구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내용이 광범위한 관계로 3개지구로 분류한 이외에 정부의 행정체제와 일치시켜 각구마다 내정 (內政) 국제관계 (國際關係) 군사 (軍事) 재정 (財政) 경제 (經濟) 교육문화 (教育文化) 교통 (交通) 사법 (司法) 변강 (邊疆) 및 교무 (僑務) 등 10개조를 설치하였다. 각 위원은 개인의 전공과 학식경험에 따라 그중 어느 조에 참가하여 연구하게 된다. 만약 동일 연구구내 같은 조에 위원이 많을시에는 연구조를 증설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대북연구구 「내정조」는 3개조로 늘어났으며 경제조와 교육문화조는 각각 2

[ 부표 2 ]

대륙광복설계연구위원회 기구표

1. 기 구





개조로 늘어나 현재 총 25개조로 편성되어 있다.

각조는 연구성과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안의 성질에 따라 약간 소조(小組)를 두어 연구를 분담케 하고 있다  
(부표2 참조)

위에서 설명한 조(組) 이외에 동위원회는 특수문제연구를 위하여 각종 전문연구소조를 두고 있으며 동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15년 동안 62개 전문소조로 늘어났다. 그 한예를 들면 「국경」 「무적군인 취업」 「수리」(水利) 「대륙광복후 외국인 재산처리」 「전지정무 인원수첩」 「5권의 권한과 책임」(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탄핵권, 고시권) 등 전문소조(專門小組)와 「해남도재건」 「분성재건(分省)」 「분구(分区) 재건」 등 지역성의 전문소조로서 이 소조는 연구가 완성되면 자연 해체하게 된다

동위원회의 25개조중 대북구는 14개조, 대중구는 6개조, 대남구 5개조로 논아져 있다.

매조는 1인 내지 5인의 직원으로 구성되며 겸임비서 1인을 파견하여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 2 절 연구사업

동위원회의 사업목표 및 방침을 보면 대만 건설과 대륙광복을 위하여 각종 방안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실시함으로써, 대륙반공시 군 작전과 통합시켜 총력전의 역량을 발휘토록 하는 동시에 대륙을 수복한 후에 실시할 제반 정책을 수립계

획하고 방법을 구체화하는데 두고 있다. 또한 동위원회는 각 방안을 실제 연구함에 있어

1. 국부 손문의 삼민주의와 그 가르침
2. 헌법정신을 준수하며
3. 총통의 훈시를 명심해서
4. 대륙괴뢰들의 폭정을 무너트리고, 대륙동포의 필요에 따른다는 4개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와 원칙하에 연구과제는 「방공전」 「반공시」 「반공후」의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는데

가. 방공전 단계에서는 :

방공기지 건설과 전쟁준비에 관한 제 정책을 연구계획하며

나. 반공시 단계에서는 :

반공 군사행동중 전지정무에 관한 제 정책을 연구계획하며,

다. 반공후 단계에서는 :

국가 재건방안에 관한 문제를 연구 계획한다.

동위원회의 과제의 연구처리과정은 다음과 같다.

- (1) 편찬위원회에서 연구과제와 연구에 필요한 참고 항목을 결정하여 연구계획서와 함께 분야별 연구조에 배부한다.
- (2) 연구조에서는 이를 연구조회의에 제출하여 초안을 작성 전문위원에게 위촉 정리케 한후, 다시 동조회의에서 검토한 후 편찬위원회에 제출한다.
- (3) 편찬위원회에서는 각 연구조에서 제출한 방안을 종합정리하여

종합심의회에 제출한다.

(4) 종합심의회에서는 종합된 방안을 재검토 완성된 방안으로만 들어 비서처에 제출한다.

(5) 비서처에서는 최후 심사를 하는데 이상이 있을 시는 다시 회부하지만 이상이 없을 시는 총통에게 상신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하달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동회의연구는 통신방법 이외에 일반적으로 모두 회의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회의의 종류와 성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조(組)와 전문조회의

조회의에서는 편찬위원회에서 제시한 연구 참고항목에 대한 검토와 방안내용을 초안하는데 회의도중 방안내용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수시로 관계 정부 공무원과 전문가를 초청하여 참석케 한다.

#### (나) 종합연구조회의

종합연구조회의는 각 연구구(區) 연구조의 소집위원을 비롯하여 비서처 편집위원, 및 동위원회 각 단위 책임자로 구성되어 반년에 한번씩 회의를 개최하는데 그 주요 임무는 동회의 사업 계획심의를 비롯하여 각조에서 연구완성된 방안 종합과 각 연구구의 사업보고를 청취한다. 회의는 주임위원이나 부주임위원이 주관하며 주요한 방안은 거의 본회에서 결정된다.

#### (다) 전체 위원회

전체 위원회의는 매년 한번 개최하는데 그 주요 임무를 보면

다음과 같다.

(i) 비서처와 각 연구구의 사업보고 처리

(ii) 전문 (專門) 문제보고

(iii) 동위원회 회무와 각항의 의제토론

(iv) 총통 건의사항

(v) 주임 위원건의사항

전체위원회의는 비록 방안을 토의하지는 않으나 국가 중대문제에 대한 의견 발표와 정부에 건의사항을 제출한다. 이밖에 개최되는 확대좌담회에서는 국내외 저명인사를 비롯 정부요원 국외사절단 및 반공의사를 초청하여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동위원회는 지금까지 4583종에 달하는 도서, 잡지, 지도등을 수집하였으며 번역 및 편찬한 자료도 1200여종에 달한다.

### 제 3 절 단계별 방안 연구내용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위원회가 연구하는 방안은 반공전, 반공시, 반공후의 3 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다. 이를 단계별로 고찰하기로 한다.

#### 1. 반공전 방안

첫째 : 대만을 견고히 하고 대륙을 수복하기 위한 총동원 강화안  
이 안은 반공작전에 필요에 따라 전국에서 동원 가능한 인력 물력의 수량과 그 증가율 및 보충의 정도를 집계하고 이곳에

서 발생하는 제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표를 두고, 인력, 물력 재력동원의 최저 수요량과 그 최대한도의 물자생산, 소비량, 국민소득, 부담능력, 현 재고량등을 집계하고 작전시 공급 가능한 양을 조사하여, 그 부족한 차를 보충하는데 중점을 두고 연구한다.

이 안은 원래 104개 과제가 선정되어 연구되었으나 연구, 종합 정리된 것이 72건, 보류된 것이 2건, 계속 연구되고 있는 것이 1건, 총통에게 보고된 것이 69건으로써 이를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내 정

- (1) 대륙민중에게 반공을 책동하는 요강초안
- (2) 도시개혁 추진의견
- (3) 민방위계획 요강초안
- (4) 국민보건강화계획초안
- (5) 동원시 경찰법규 방안초안
- (6) 동원시 정치혁신 요강초안
- (7) 호구정책개선추진계획 요강초안
- (8) 동원시 사회행정강화조치계획 요강안
- (9) 기본 조직방안 초안
- (10) 동원기구조성 방안초안

#### 나. 국제관계

- (1) 국제연합헌장 수정문제 결론
- (2) 대아주반공 및 비공산국가관계강화 방안초안
- (3) 중미공동방위조약 발효후 중미관계강화 방안초안

- (4) 대라틴민주 각국관계 강화 방안 초안
- (5) 외교조직강화안 초안
- (6) 대 구주반공국가 및 비공산국관계 강화 연구
- (7) 공산집단의 외교정세에 대한 대책연구
- (8) 국제문화협력 추진 방안 초안
- (9) 국민외교 강화안 초안
- (10) 현 외교정책 대강 초안
- (11) 연합국 관계 강화안 초안
- (12) 중·소관계 연구 보고 초안

다. 군 사 소

- (1) 국방건설 현황의 검토 및 개선에 관한 의견
- (2) 적정의 판단과 공산군 전략전술에 관한 연구
- (3) 심리전안 초안
- (4) 군사체제 개혁안 초안
- (5) 대륙 반공 전략전술에 관한 연구

라. 재정·경제

- (1) 조세 개선추진안 초안
- (2) 재정현황의 연구보고 초안
- (3) 국민소득의 연구보고 초안
- (4) 전시 재정력 총동원안 초안
- (5) 생산동원안 초안
- (6) 인력과 물력동원안 초안
- (7) 대공산 경제작전안 초안

(8) 협력사업의 조정과 추진안 초안

(9) 국제무역 촉진안 초안

마. 교육문화

(1) 어문개선 추진 건의안 초안

(2) 교육문화 동원안 초안

(3) 인재배양안 초안

바. 교 통

(1) 교통정책 초안

(2) 교통동원안 초안

사. 사 법

(1) 사법기관과 군법 기관이 취급하는 안전에 긴밀히 협조하는 방법 초안

(2) 소년범죄예방과 교도계획 대강 초안

(3) 사법요원 확보안 초안

(4) 중공의 치안 법률보장의 검토 보고

(5) 법치주의정신 앙양안 초안

(6) 국가동원령의 검토 보고

아. 변 강

(1) 변강 건설의 필요 요원 확보계획안 초안

(2) 국내의 변강인사 단결강화안 초안

(3) 변강지역 무력반공 체동안 초안

(4) 중공의 변강정책과 그 시설에 관한 연구보고

자. 교무 (緡務)

- (1) **화교** 경제 발전안 초안
- (2) **교포** 대공산경제 작전안 초안
- (3) 반공후 화교 정책안 초안
- (4) 교포·교육문화 발전책 초안
- (5) 교포의 인력 재력동원과 반공역량 강화안 초안

둘째 : 대만건설과 동원준비를 촉진하여 반공수복을 유리하게 하는 안

이 안은 「대만을 견고히 하고, 대륙광복을 수복하기 위한 총동원 강화안」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정부가 당면할 중대 문제를 사전 검토 연구하여 구체적 개혁방안과 방법을 제시하는데 목표를 두고 「대만경제건설계획과 그 성과 보고서」, 「대만 ⑦,⑧ 수재복구방안과 그 성과보고서」, 「군사동원 방안」등을 참고로 하여 각 조가 연석회의를 개최 공동 연구한다.

이 안은 원래 138개의 과제가 선정되어 연구되었으나 종합조회의에서 보류된 것이 14건, 계속 연구케 한 것이 3건, 통합조정을 요하는 것이 2건, 나머지는 성질이 유사하여 77건으로 병합되었는데 이 중에서 종합조회의에 다시 제출한 것이 1건, 총통에게 보고된 것이 76건으로써 분야별로 그 내용을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 가. 내 정

- (1) 동원기구 조정안 초안
- (2) 의도개발 요강 초안
- (3) 제층 책임제도 실행안 초안



- (4) 인사제도와 행정효율 강화안 초안
- (5) 대만호적을 엄밀히 하는안 초안
- (6) 자작농작 실시안 초안
- (7) 공무원 노동보험·의료사업 개선·추진의견
- (8) 퇴역군인 원호문제 방안초안
- (9) 지방자치조직과 선거법 개선추진안 초안
- (10) 대만성 경찰행정 개선추진안 초안

나. 국제관계

- (1) 연합국간에 협력강화안 초안
- (2) 국제공산집단의 세계적화를 방지하는 방안 초안
- (3) 대아주 외교관계 강화책 초안
- (4) 아주동맹조직을 기초로 하여 세계 반공역량을 단결시키는안 초안
- (5) 국민외교 강화책 초안

다. 군사

- (1) 정부가 중·미·월 3국 군사협정을 추진하여 원남통일과 대륙을 수복하여 쓰련의 세계적화의 야심을 분쇄하는 건의안
- (2) 대륙반공 지원과 확대안 초안
- (3) 중·(쓰)의 반정보 활동연구
- (4) 심리전 방안 수정안 초안

라. 재정

- (1) 전시 공채의 발행과 운영문제

- (2) 금리현실화의 이해득실문제
- (3) 조세제도 개선추진안 초안
- (4) 세무개혁에 관한 연구안
- (5) 예산제도 개선안 초안
- (6) 세무풍기의 정비와 기구 개선문제
- (7) 투자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보도기구와 그 직권강화안  
초안

#### 마. 경 제

- (1) 협동농장의 행정과 업무관리 강화의견 초안
- (2) 수리공사의 확충과 유지 보호 관리문제
- (3) 군량 비축안 초안
- (4) 대만과 아메리카 제국과의 무역촉진문제 초안
- (5) 횡단국도, 연안 자원개발 요강 초안
- (6) 전시경제체제 확립 요강 초안
- (7) 산림의 보호와 이용 요강 초안
- (8) 입야조림으로 홍수를 예방하는 건의안 초안
- (9) 대외무역확대안 초안
- (10) 공업실계의 기본방침 초안
- (11) 지하수 자원개발문제 연구 초안
- (12) 무역진흥과 해외시장개척에 난점 해결방법 연구

#### 바. 교육문화

- (1) 대만 위생교육사업 발전방안 초안
- (2) 중등학교 입시에 상식과목 회복건의안 초안

- (3) 전문학교 이상 학생모집분제 전의안 초안
- (4) 예술 수준에 제고안 초안
- (5) 아동들의 독서물 심사안 초안
- (6) 재학 청년에 대한 심리보도 실시안 초안
- (7) 벽지 교육 촉진안 초안

박. 교 통

- (1) 교통기재 동원준비계획 초안
- (2) 교통인원 동원준비계획 초안
- (3) 공영 교통사업 경영제도 개선안 초안
- (4) 전시 교통방호 및 응급수리안 초안

사. 사 법

- (1) 사법관기 수련안 초안
- (2) 소년법 대책 초안
- (3) 사법 보호 개선 추진안 초안
- (4) 흉악한 살인사건의 원인 분석과 그 대책 초안
- (5) 법원조직법 수정의견
- (6) 사법 인사제도 정상화안 초안

아. 변 강

- (1) 변강지역 공비정세 연구 강화안 초안
- (2) 변강지역 행정간부와 어문, 인재, 예비훈련안 초안

셋째 : 계리라전 강화와 반항혁명 추진 운동안

이 안은 원래 12개의 과제가 선정 연구되었으나 종합조회  
의에 보류된 것이 4건, 정리중인 것이 1건, 총통에게 보고 된

것이 7건으로써 분야별로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가. 군 사

- (1) 특종 기동부대 조직 및 훈련과 적 후방 기지건설로 반공에 호응케 하는 방안
- (2) 공산 정치전 강화에 대비한 항폭 운동 확대와 군사 공격으로 대륙을 수복하는 안
- (3) 괴뢰 지역내에 통신망을 조직하여 공작원과 정보 연락하는 안
- (4) 반공 상륙작전시 핵무기 방호문제에 대한 초안
- (5) 해군의 대륙상륙의 기점과 그 방법 연구안

나. 교육문화

- (1) 대륙 제리타의 강화와 대륙 반항혁명운동을 촉진시키는 데 교육문화에서 대비하여야 할 대책 초안

다. 변 강

- (1) 변강지역 반공혁명운동 추진 방안

넷째 : 현 세계정세에 적응으로 반공준비를 촉진하는 안

이 안은 73개 과제가 선정 연구되었으나 종합회의에서 보류된 것이 7건, 통합조정이 요망되는 것이 14건, 나머지 52건은 성질이 유사하여 35건으로 병합되었다. 이 중 정리보고를 기다리는 것이 2건, 종합회의에 제출되어 토론을 기다리는 것이 12건, 총통에게 보고된 것이 21건으로써 이를 분야별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내 정

(1) 인력동원안 연구

나. 국제관계

(1) 불란서가 중공을 승인한 후에 생길 영향과 그 대책초안

(2) 중·소의교관계 변화의 측정 초안

(3) 중·소의 중남미 침투와 그 영향에 관한 연구

(4) 아주와 신흥국가에 있는 화교의 영향과 대책안 초안

다. 군사

(1) 중공의 핵발전 상황 연구안

(2) 월남 군사정세와 대륙광복 연구

(3) 중·소분쟁의 격화가 국방에 미치는 영향연구

(4) 아주 반공군사동맹의 연구비판

(5) 중공의 파키스탄, 아프카니스탄, 인도, 네팔 침투에 대한 연구

라. 재정

(1) 당면 증권시장의 관리운영과 개선문제 연구

(2) 당면 금융제도와 금융시장 개선책 초안

마. 경제

(1) 지하수 자원개발문제 연구수정안

(2) 국제시장개척과 외화획득안 초안

바. 교육문화

(1) 교육문화동원안 수정보충안

사. 교통

(1) 교통동원 법령 수정의견

아. 사범

(1) 사범 교육훈련 강화와 대륙 사범 재건요강 초안

(2) 수복지구 평정시 치안법령 검토 보고 및 수정 보충 의견

사. 변강

(1) 재대만 변경청년 조직 훈련안

(2) 중공통치하에 있는 대륙 변강지역의 현황연구와 비판안

## 2. 반공시 방안

첫째 : 수복지구 군정시 정무실시안

이 안은 대륙 반공시 수복지구에서 발생할 제반 문제점을 예상하여 그 적절한 해결방법 모색과 군정시의 실시할 적절한 방안을 구상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항목의 성질이 서로 관련될 때는 각조가 연석회의를 열어 공동연구로 추진하게 된다.

가. 전지단계 (戰地段階) 에서 정상단계까지를 3 단계로 나눈다.

(1) 1 단계 → 군사 최고장관이 각급정무를 취급한다.

(2) 2 단계 → 전쟁지역 정무위원회가 관할지역의 정무를 지휘한다.

(3) 3 단계 → 정무를 행정원에서 접수한다.

나. 군정지역의 정무집행기구와 인원 및 원칙, 격식을 계획한다.

다. 「인민공사」 후의 대륙실정에 치중한다.

라. 전지에 근무할 행정원은 행정원과 고시원에서 선출하여  
훈련시킨다.

마. 전쟁지구의 행정기구는 잠시 기존 행정기구와 조직을 이  
용하고 안정시가 되면 정부조직에 일치하도록 조정한다.

바. 전지 정무인원 복무준칙을 만든다.

이 안은 원래 105개 과제가 선정되어 연구가 시작되었으나 종  
합조에서 보류된 것이 11건, 연구를 계속케 한 것이 3건, 나머지  
89건은 성질이 유사한 관계로 39건으로 병합하여 총통에 보고되  
었다. 따라서 분야별로 그내용을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 가. 내 정

- (1) 수복지구에 각급 정권수립 방안 초안
- (2) 수복지구 행정기본조치 실시안 초안
- (3) 수복지구 토지정책 실시안 초안
- (4) 군정시 사회행정안 초안
- (5) 수복지구 공공위생안 초안

#### 나. 국제관계

- (1) 중·소의 음모와 변행적발에 관한 연구
- (2) 대 UN정책의 검토와 개선안
- (3) 군정시 의원 획득문제에 관한 연구

#### 다. 군 사

- (1) 수복지구 진압책 초안
- (2) 상이군인 원호대책 초안
- (3) 포로관리와 운영방안 초안

- (4) 광복지구 민방위 계획안
- (5) 작전시 경비방안 초안
- (6) 보충가능한 병력과 물자집계 방안 초안
- (7) 광복지구 피뢰물자의 관리 운영안 초안

라. 재 정

- (1) 수복지구 재무행정제도 요강 초안
- (2) 수복지구 조세 재건방안 수립
- (3) 수복지구 은행제도 수립안 초안
- (4) 광복초기 보험방안 대강 초안
- (5) 광복지구 화폐처리 의견

마. 경 제

- (1) 중공의 협동사업의 접수와 정리안 초안
- (2) 수복지구 농산물 생산판매안 초안
- (3) 광복지구 경제행정 긴급조치책 초안
- (4) 반공시 식량동원책 초안
- (5) 광복지구 수리공사의 응급 수리와 관리 계획 요강 초안
- (6) 수복지구 상업의 정리와 발전책 요강 초안
- (7) 수복지구 광산업의 정리와 발전책 요강 초안

바. 교육문화

- (1) 수복지구 군정시 교육조치 방안 초안
- (2) 수복지구 군정시 문화사업 실시안 초안

사. 교 통

- (1) 전시 교통 조치안 초안



아. 사 법

- (1) 진압지구 사법기관 조직요강 초안
- (2) 수복지구 혼인사건 처리조례 초안
- (3) 진압지구 민사소송 절차 간소화 원칙 초안
- (4) 진압지구 형사소송 절차 간소화 방안 초안
- (5) 대륙광복후 민사 소송 절차 원칙 초안
- (6) 광복지구 가옥, 토지, 재산보류 처리법 원칙 초안
- (7) 광복지구 채권 채무 처리 원칙 초안

자. 변 강

- (1) 변강지구 정치강령 및 실시안 초안
- (2) 군정시 반공조직 및 지휘방안 초안
- (3) 변강 인사들을 반공혁명에 참가케 하는 방법 초안
- (4) 군정시 몽고지방 행정조치안 초안
- (5) 외몽고 수복지에 대한 선전 및 활동 강화책 초안
- (6) 중공의 「민족자치구」 처리 방법 초안

차. 교 무

- (1) 교포 구호대책 초안
- (2) 교포의 역량을 동원 전지사업을 지원토록 하여 수복지구를 견고케 하는 방안 초안

둘째 : 반공의 필요에 따라 「군정시 정무실시안」을 개정하는 안  
이 안은 중공의 정세변화와 국제정세 변화로 이미 완성된 「군정시 정무실시안」을 수정 보완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정무집행기구와 인원 및 원칙 격식등을 수정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

다.

이 작업에서 수정이 필요한 과제는 23건으로써 모두 수정 보완되었으나 종합조에 보류되어 있는 것이 5건, 보고되어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1건, 총통에게 보고된 것이 11건이나 된다. 이를 분야별로 나누어보면 아래와 같다.

가. 내 정

- (1) 수복지구 토지 정책 실시 방안
- (2) 군정시 사회행정 실시안 초안
- (3) 「인민공사」 처리원칙 초안
- (4) 광복초기 공공위생 긴급조치 방안 초안
- (5) 광복초기 농장처리와 생산회복책 초안
- (6) 가옥문제 처리방법 초안
- (7) 공비의 「인민공사」와 민병조직 관계 연구
- (8) 광복초기 난민 긴급구제 및 원호방법 초안

나. 국제관계

- (1) 광복초기 우방의 협조로 난민을 구제하는 방법 연구
- (2) 광복초기 국제선전 방안 초안

다. 군 사

- (1) 군사와 관계되는 부분의 접수 방법 초안
- (2) 광복시 공비의 민병조직의 처리와 운영에 대한 방안 초안
- (3) 수복지구 진압시 진압책 초안
- (4) 광복시 국군 간부와 사병보충계획안 초안
- (5) 광복시 심리전과 군작전의 통합계획 대강 초안

- (6) 공비의 「인민공사」와 민병조직 관계의 연구
- (7) 상이군인 원호책 초안

라. 재 정

- (1) 광복지구, 재무행정제도 초안
- (2) 광복초기 재정금융 긴급조치안 초안

마. 경 제

- (1) 반공시 식량동원안 초안

바. 교육문화

- (1) 괴뢰교육시설에 대한 대책 초안
- (2) 광복초기 전지 청년, 학생 보도방안

사. 교 통

- (1) 전지 교통안 초안
- (2) 전지 교통관계와 운용방안 초안

아. 사 법

- (1) 진압지구에 일시사법기관 조직요강 초안
- (2) 수복지구에서 괴뢰정권이 이미 확정 판결하였거나 아직 소송중에 있는 민사, <sup>형사</sup> ~~협사~~, 안전처리원칙에 대한 초안

자. 변 강

- (1) 변강지역에서의 정치적 호응 강령과 실시안 초안
- (2) 군정시 변강 각지에 반공조직 책동과 지도 방침 초안
- (3) 변강지역의 사회제도와 생산제도 개선안 초안

차. 교 무

- (1) 교포와 외교를 조정 일치시켜 국제사회에서 반공의 지 원을 강화하는 방안 초안
- (2) 화교청년의 전지복무 장려책 초안
- (3) 교포들의 헌납 장려책 연구

### 3. 반공후 (反攻後) 방안

#### 첫째 : 대륙광복후 국가건설 총방안

이 안은 정부가 대륙 전역의 건설을 계획할 시 시정계획에 참고로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다음 여러 사항에 유의하여 연구한다.

가. 헌정이 회복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실시할 사항

나. 이 내용은 행정원이 직접 관리한다.

다. 본안 내용은 『성(省), 시(市), 구(區) 및 몽고(蒙) 저장지방(江) 재건 방안』·『중앙건설방안』 및 『구역(區域) 건설방안』으로 구분 처리 된다.

라. 『중앙건설방안』은 『지방건설방안』과 병행 통합한다.

마. 물질건설을 우선으로 한다.

이 안은 180개 과제가 선정되어 연구되었으며, 이미 연구가 완성된 것은

- (1) 대륙광복 국가재건 강령 (68 건)
- (2) 중앙건설안 (58 건)
- (3) 구 건설안 (10 건)
- (4) 성 건설안 (45 건)

등 4개부분으로 종합하였다. 그 중 『대륙광복 국가재건 강령』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 내용의 대개의 줄거리를 보면

- (1) 삼민주의를 실현한다.
- (2) 국방을 현대화하고 변강 개발을 추진한다.
- (3) 국제간의 집단안전보장체제를 수립한다.
- (4) 세계의 정의와 평화를 유지 보호 한다.

- (5)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다.
- (6) 국가건설에 통일성을 기한다.
- (7) 국제경제협력을 추진하며, 화교의 자본투자를 장려한다.
- (8) 민영기업을 추진한다.
- (9) 국내 각 민족을 평등히 한다.
- (10) 사유재산을 존중한다.
- (11) 부동산판매 및 경제활동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한다.

상기 강령을 다시 정치, 경제, 사회문화교육, 사범등으로 구분하여 약술하면 아래와 같다.

#### 가. 정 치

- (1) 민주정치를 실시한다.
- (2) 변강의 각 민족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3) 책임정치를 이행한다.
- (4) 지역별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한다.
- (5) 국방제도에 적응하는 행정체제와 직권을 확정한다.
- (6) 사회의 안녕유지에 이바지한다.
- (7) 해외교포의 이익을 보호 증진한다.
- (8) 국제연합헌장을 존중한다.
- (9) 평등호혜원칙에 입각한 국제조약을 존중한다.
  - (가) 인근국가의 영토와 주권을 존중한다.
  - (나) 아주경제의 이익을 보장한다.
  - (다) 아주지역 회의를 모색한다.
- (10) 지역안전제도의 수립을 촉진한다.

상기 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이를 실시 하고 있다.

△ 행정제도

- (1) 중앙각급기관은 실제의 수요에 따라 조정한다.
- (2) 지방행정구는 점차적으로 구제로 환원한다.
- (3) 몽고 서장지역은 그 지방민이 요구하는 적당한 행정제도로 제정한다.
- (4) 기술행정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보장한다.
- (5) 각급 지방정부기관의 내부편제는 그 지방정세에 의하여 원칙을 규정한다.

△ 국 방

- (1) 국방정책의 결정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직책에 속한다.
- (2) 평시 국가안전제도와 전시 국군지휘체제는 주관부처에서 제정한다.
- (3) 국방에 관한 계획은 총력전을 고려한다.
- (4) 자원개발과 중공업건설은 먼저 국방수요에 적용한다.
- (5) 국민생활의 조건과 전투조건을 일치시킨다.
- (6) 원자전에 대비한 민방계획을 한다.
- (7) 상무정신을 제고시킨다.
- (8) 징병제도를 시행한다

△ 외 교

- (1) UN헌장을 존중한다.
- (2) 중화민국 외교원칙에 부합되는 각종 국제회의활동에 참가한다.
- (3) 종래 불평등조약으로 빼앗긴 영토를 회수한다.
- (4) 인근국가와 공동방위협정을 체결한다.

- (5) 아주지역에 안전체계를 구성한다.
- (6) 아주국가와 경계체계를 구성한다.
- (7) 아주지역이외의 국가와는 경제·무역조약과 기술협력 및  
합작투자방식으로 국가부흥을 촉진한다.
- (8) 미국과 장구적인 우호협조동맹을 체결한다.
- (9) 국제간의 문화교류를 증진한다.
- (10) 신흥국가와 외교를 강화한다.
- (11) 외교관계 수립국 이외의 국가와는 문화협정을 체결한다

#### △ 민 정

- (1)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헌법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  
리 개정한다.
- (2) 중앙정부기관과 지방정부기관의 관계를 확정하며 지휘  
감독체계를 확립한다.
- (3) 호적사무체계를 확립한다.
- (4) 전시의 각급보안조직을 철회하며 건전한 경찰제도를 수  
립한다.
- (5) 사회단체조직에 관한 각종제도를 확립하며 그 목적하는  
사업을 보조한다.

#### △ 변 강

- (1) 변강정책은 중앙에서 결정집행하되 소재지 지방정부기관  
에 이를 위탁 집행케 한다.
- (2) 변강의 각 민족은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다.
- (3) 정교합일제도(政敎合一制度)는 점차 분류 민주체제에  
부합되도록 한다.
- (4) 변강 각 민족의 고유언어문자는 보유하되 학교교육에서

- (1) 재정수지는 사항에 따라 조정한다.
- (2) 재정기관과 재무기구의 한계를 확정한다.
- (3) 국영사업의 예산공제와 심제는 이미 이루어진 회계원칙에 의거 처리하고 업무의 경영과 관리의 규정은 따로 정한다.
- (4) 각 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공채<sup>채</sup>는 입법절차에 따른다.
- (5) 각급 정부기관은 수익을 원칙으로하여 규정 수수료를 설정한다.

#### △ 조세

- (1) 조세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의거하여 부담한다.
- (2) 탄력성 있는 조세 제도로 개정하여 경제발전에 적응토록 한다.
- (3) 현재의 조세기구를 기초로 하되 점차 직접세를 간접세로 한다.
- (4) 토지세는 토지정리를 완료한 후에 실시한다.
- (5) 사치품은 중세로하고 일용품은 경세로하며 공업원료는 면세로한다.
- (6) 대물세는 점차 폐지한다.
- (7) 국내의 화물세는 입법규정에 의거 중앙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 (8) 수출은 면세로하고 수입은 국정세칙을 제외한 호혜관세로 보충한다.
- (9) 영업세는 영업성질에 따라 분류 사정하고 이익증가



부분은 따로 세율을 정한다.

- (10) 물종 영업세는 영업상황에 등급을 평정한 후에 세액을 개정한다.

△ 금융

- (1) 경제상황에 따라 금융구를 나누며 전국 금융망을 조직한다.

- (2) 중앙은행제도를 수립하여 보통은행업무의 병행을 금한다.

- (3) 한 금융구에 한 중앙은행을 설치하고 분점을 불허한다.

- (4) 수도에 관리소를 두어 정책의 추진과 감독을 담당케한다.

- (5) 특수 금융구는 민영으로한다.

- (6) 중앙은행을 제외하고는 업무의 범위를 개정한다.

- (가) 중앙은행은 국제환은행으로 개편하여 국제무역 발전에 기여케 한다.

- (나) 교통은행은 실업은행으로 개편하여 실업업무를 조정토록 한다.

- (a) 중앙농민은행은 농민은행으로 개편하여 농업지역에 기여케 한다.

- (7) 해양사업은행을 신설하여 해양사업의 경영을 보조한다.

- (8) 특종 금융기관의 업무범위를 전문업의 범위로 개정 독립시킨다.

- (9) 민영은행의 업무경영은 등록시 장단기 계획을 명기하여야 한다.

- (10) 지방은행은 보통은행과 동일한 제약을 받으며 관할지역

이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 △ 경제사업

- (1) 공장과 광산은 국내외인의 투자경영을 장려한다.
- (2) 공영공장과 광산사업은 기업방식으로 조직 법인의 지위를 부여하여 사업경영에 종사토록 한다.
- (4) 공장과 광산에 대한 연구기관을 설치하여 권익을 보호하고 생산기술을 개선하며 과학적 관리제도를 수립한다.
- (5) 전국 천연자원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 (6) 집단생산단지를 구성하여 통일된 상품과 대량생산을 도모 한다.
- (7) 농업건설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수리사업-비료생산-병충약품-우량(농정)-농구제작-기술시범)
- (8) 전국의 천연산림은 국유림으로 하며 중앙에서 경영한다.
- (9) 국영목장을 설치하여 이를 장려한다.
- (10) 수리시설은 중앙정부에서 주관하며 수리사업의 전담기구를 병설하되 성에 있는 것은 지방정부기관에서 주관한다

#### △ 교통

- (1) 교통사업은 공영과 민영을 서로 통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교통기구는 기업조직제도를 채택하고 기업경영과 일반행정을 구분한다.
- (3) 인사제도는 전문업 인사제도를 채택하여 일반행정인사제

도와 구분한다.

(4) 재무는 교통사업 특별회계제도를 채택하여 각종 기준을 수립한다.

(5) 철도총국을 설치하여 철도의 경영을 주관한다.

(6) 공도총국을 설치하여 전지역의 국도건설과 경영 및 기계제작을 주관한다.

(7) 국도를 증설할 때는 각성에 국(局)처(處)를 설치하여 이를 주관토록 한다.

#### △ 국제무역

(1) 자유경쟁을 원칙으로 하여 호혜무역협약을 수립한다.

(2) 수출상품을 표준화 한다.

(3) 상무공증제도와 **검험**제도를 수립한다.

(4) 무역**홍신**기구를 설치하여 수출입 화물의 시장공급, 수요의 정세를 조사한다.

#### △ 지정(地政)

(1) 대 규모의 수력·수리·임업·어장·염전·지하자원 등은 국유로 한다.

(2) 정부에서 직접경영하는 것은 국영정책에 의거한다.

(3) 개인이 경영하는 것은 정부에서 관리한다.

(4) 도시의 토지는 공유로 하되 국민은 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취득한다.

(5) 시의 지적은 전면으로 정리한다.

(6) 땅값은 지적측량 또는 지적정리시 규정하여 신고토록

한다.

- (7) 농지는 경작자에 한하여 소유할 수 있으며 이전할 시  
도 역시 경작자에 한 한다.

#### △ 합작사업 (合作事業)

- (1) 합작사업은 국민이 자원하여 조직한다.
- (2) 합작기구를 건전케 하기 위하여 합작등기제도를 수립한  
다.
- (3) 각구 단위의 합작회사는 자동으로 연합되며 전국연합총  
사를 조직할 수 있다.

#### △ 사회보장

- (1) 사회보장전문기구를 설치하여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한다.
- (2) 사회복지조직을 강화하여 사회풍기를 개조한다.
- (3) 국민주택 건축계획을 제정한다.
- (4)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한다.
- (5) 노동자는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다.
- (6) 「공회」를 조직하여 전국적인 연합조직을 할 수 있다.
- (7) 노동자는 국가정책에 준수하여야 한다.
- (8) 최저임금을 법으로 확정한다.
- (9) 노동자 이익 배당제를 채택하여 노동자에게 주식 가입을  
장려하고 생산계획에 참가 할 기회를 부여한다.
- (10) 노동복지의 실시로 노동자의 생활개선, 주택건축, 탁아소  
설치, 오락시설, 위생설비설정, 이에 대한 검토제도를 이행  
한다.

△ 화폐

- (1) 화폐제도는 당시 형편에 따라 수립한다.
- (2) 신용화폐의 이론과 실제를 참작하여 기본원칙을 정한다.
- (3) 통일된 화폐는 중앙은행이 취급하며 각구의 화폐는 점차 회수하여 대치한다.
- (4) 중앙은행은 하기 삼개 위원회를 설치하여 화폐정책을 수립한다.
  - (가) 기금평준위원회
  - (나) 발행액 심사위원회
  - (다) 초과액 발행준비 검사위원회
- (4) 신 화폐의 대외가치는 「元」으로 한다.
- (5) 광복초기에는 중앙은행 화폐와 지방권을 병용하되 화폐의 교환차액은 따로 정한다.
- (6) 통화관리기간 동안은 금·은 및 외화의 소지는 가하되 유통은 불허한다.

다. 교육문화

- (1) 삼민주의를 관철하며 세계조류에 적응하여 교육문화정책을 수립한다.
- (2) 교육내용은 고대 문예교육에 근거한다.
- (3) 민족주의의 도리를 천명한다.
- (4) 민권주의의 운영방법을 훈련시킨다.
- (5) 민주주의의 기초를 배양한다.
- (6) 학술의 자유를 존중한다.

(7) 핵연구를 적극 추진하여 평화에 기여케 한다

(8) 교육건설은 경제건설과 일치 시킨다.

상기 강령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이를 실시한다.

#### △ 학교교육

(1) 학교교육은 통일계획연구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을 연구한다.

#### (가) 유아교육

3세~6세를 대상으로 하며, 신체발육과 건전한 습관을 배양시킨다.

#### (나) 국민교육

6세이상의 아동이 해당되며, 의무교육으로 한다. 중앙에서 학비를 조달하며, 기본년한을 6년으로 한다.

#### (다) 중등교육

3·3제를 위주로 하나 경우에 따라 4·2제 또는 5년제로 한다.

#### △ 직업학교

초급 고급 5년제의 3종으로 나누며 생산사업 및 사회수요에 알맞도록 발전시킨다.

#### △ 사범학교

초·중학을 졸업했거나 동등한 학력을 소유한 자를 모집하여 3년간 수업시킨다. 단 필요할 시는 속성과를 부설하여 1~2년간으로 단축시켜 졸업시킨다.

#### △ 고등교육

- (1) 대학교 및 단과대학이 이에 포함되며 최저 4년간의 수업과정을 둔다.
- (2) 필요에 따라 전수과를 부설하여 2~3년간으로 단축 수업 시킨다.
- (3) 각과에는 대학원을 설치하여 2~4년간 전문적인 연구를 시키며 국가에서 학비를 보조한다.
- (4) 국립대학은 교육대학을 설치하거나 교육과를 증설하여 교사양성에 치중한다.

#### △ 전문학교

- (1) 5년제로 하며 전문업의 기능과 지식의 학습을 위주로 한다. 전문학교 졸업자는 대학교나 단과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 (2) 전국대학 및 전문학교는 각구의 특수 수요에 따라 설치하며 균형 있는 발전에 치중한다.

#### △ 변강교육

- (1) 변강교육은 국어국문 및 국사 지리에 유의하여, 중화분화를 발양시킨다.
- (2) 변강지역에는 사범학교와 직업학교 설립에 치중하며 그 예산은 중앙에서 보조한다.

#### △ 사회교육

- (1) 사회교육은 농촌과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표로 한다.
- (2) 사회교육은 학교교육과 밀접하게 관련시키며 일반시민의

수요에 따라 계획을 작성 추진한다.

(3) 사회교육은 보습교육과 특수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 △ 문화시설

(1) 중앙과 각성에 역사문화관을 설치한다.

(2) 출판사업을 장려한다.

(3) 현 중앙의 학술연구 계획을 개정한다.

(4) 신문정책을 개정한다.

(5) 사설 사회교육사업을 장려 육성시켜 지도하고 보조한다.

#### △ 문헌

(1) 문헌을 재정비하고 고유문화를 보존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민족정신을 발양시킨다.

#### (2) 범위

(가) 각종 구서 및 지도

(나) 각종 악기 및 서화

(다) 민속가요

(라) 고적명승 사진

(마) 건축물 및 조각품

(바) 특수한 금속품 및 사진

(사) 각기관 단체가 발행한 간행물

(아) 개인의 시문, 야사, 저작 및 번역물

(자) 유적, 전기, 비문

(차) 개인의 가보

#### 라. 사법



- (1)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다.
- (2) 법치 주의의 원칙을 실시하여 사회를 안정시킨다.
- (3) 사법기능의 효과적인 능률을 발휘한다.

기 강령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이를 실시한다.

#### △ 사법제도

- (1) 법원의 심리는 3급 3심을 원칙으로 한다.
- (2) 사법권의 운영은 독립으로 행사한다.
- (3) 공증제도를 추진하여 소송사건을 감소하고 민사사건의 화해제도를 운용한다.
- (4) 공무원 징계제도 및 행정소송제도는 실제경험을 살려 개선하되 헌법에 의한다.
- (5) 사법행정부를 설치하여 법률초안을 전담하며 사법요원의 양성을 비롯하여 행정법률사항의 자문에 응한다.

#### △ 사법규정 및 소송절차

- (1) 민법 및 각종민사 특별법은 국가 중요정책과 사회경제 정세변동 및 실무상의 경험에 의거 분류 수정한다.
- (2) 형법 및 각종형사 특별법은 기본 사회형사정책과 실무상의 경험에 의거 분류하여 수정한다.
- (3) 민사소송법 및 소송절차의 법규는 국민에게 편케하는 원칙하에 간소화 한다.
- (4) 형사권은 군법심판을 제외하고 법원이 심사한다.
- (5) 형사피해로 제기된 민사소송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법정에 이송치 않는다.

(6) 형벌과 보안처분을 동시에 선고할 시 먼저 보안처분을 집행한다.

(7) 소년범은 감화보호에 치중한다.

#### △ 교도소

(1) 교도소 내에 간수실을 설치하지 않는다.

(2) 교도소는 참회, 개~~량~~을 목적으로 한다.

(3) 출감인의 직업생활을 보도키 위하여 직업소개 기구를 설치 한다.

#### 제 4 절 연구성과

동회는 설치이후 현재에 이르기 까지 15년간 위원전체의 대륙 광복에 대한 집~~력~~과 헌신적인 봉사로 각 단계별 연구가 모두 만족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지금까지 개최된 전체회의, 종합연구조회의, 연구조회의, 및 전문조회의만도 8,544 차에 달하며, 연구 완성된 방안은 934 건이나 되고 있다. (1969년 6월 현재).

그러면 동 회가 현재까지 연구완성한 방안을 단계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 1 단계는 반공전에 속하는 부분으로 최초의 확정된 「대만을 견고히 하고 대륙을 수복하기 위한 총동원 강화안」을 비롯하여 그 후 국내의 형세의 추이와 대륙정세의 변화로 증가된 「대만건설과 동원준비를 촉진하여 반공수복을 유리하게 하는안」 「제 리라전 강화와 반항혁명 추진운동안」 「현 세계정세 적용으로 반공준비를

촉진하는안」 「반공수복의 기운을 조성하고 전 력량을 발휘하여  
피퇴정권을 타도하는 방안」등 5개의 총안이 있으며 지금까지 418  
방안이 완성 되었다.

제2 단계에서는 반공시에 속하는 부분으로 「수복지구에서의 전지  
정무 실시안」과 본 안을 수정 보완하는 「반공시 필요에 따라,  
수복지구의 전지정무 실시안을 시급히 수정하는 방안」등 2개의  
총안이 있으며 지금까지 172개 방안이 연구 완성되었다. 이외에  
반공시 전지정무에 종사할 요원을 위하여 「전지정무 인원수첩」을  
만들었다 이것은 전지정무와 관계되는 중요한 정책, 처리원칙, 각  
급단위의 조직, 및 실시방법과 인원의 임무 및 기능 등을 규정한  
것이다.

제3 단계는 반공후(광복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대륙광복후  
국가건설 총방안」이 있다. 이 총안은 「재건강령」 「성건설」  
「구건설」등으로 나누어지며 180개 방안이 연구완성 되어 있다.

이외에도 대륙수복후 현대화 된 신중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장기  
적 방안 - 대륙광복후 제 제도와 정책을 현대화 하기위한 종합  
연구안 - 을 완성시켰다.

이상 3 단계의 방안연구 이외에 전문적 성격을 띤 방안 26안,  
주임의원 건의안 20안, 위원들이 자의로 제출한 건의안 25안,  
정부기관이 동회에 위탁하여 연구한 것이 7안등 도합 78안건에  
이르고 있다.

이상의 방안은 모두 각 연구소에서 연구한 안건이며 종합연구조  
에 제출 종합정리되어 총통에게 보고되었고 총통의 재가를 받아

해당 주관부처에서 채택된 것이 359안건이나 되고 있다.

최근 대륙정세의 지속적인 변화와 국내의 정세의 변화로 이미 연구완성된 방안을 실제 필요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금년에 다시 반공전 반공시 반공후 3단계의 방안을 3개 종합전문정리조를 설치하여 원래의 범위에 구애됨이 없이 「기지건설방안」 「전지정무안」 및 「국가중건방안」으로 재 분류하여 수정, 보완 정리하고 있다.

### 제 3 장 중화민국 대륙수복의 당면문제

통일의 여건을 객관적인 국제적 여건과 주체적인 국내여건으로 분류하여 논한다면 이 양자가 동시에 성숙하여 일치점을 발견할때 또는 어느 일방이 먼저 성숙하여 다른일방이 불가피하게 이를 추종할 때 비로서 통일 실현의 계기는 마련되는 것이라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추이와 주체적 역량배양을 아울러 다루어 보기로 시도하였다.

중화민국은 20년간 주체적 역량배양을 충실히 쌓아왔으며 객관적 조건 역시 이미 성숙하여 가고 있다고 보고 대륙수복의 국제적 기운을 조성하기에 어느때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것 같다.

중화민국의 당면한 광복정책으로서는 국제적 여건 형성을 유의하고 있는데 다음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미·쏘평화공존 현상의 지속적인 유지와 미국의 적극적인 협조.
2. 중·쏘분쟁 격화에 따른 새로운 국제정세 조성.
3. 자유진영의 단결을 촉진하고, 집단안전보장을 위한 민주우방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상호 원조를 추진하되 반드시 주체성을 확립할것 등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세의 추이에 따라 중공의 국제적 고립과 새로운 수복방안이 모색될때 중화민국의 대륙수복의 여건은 마련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듯 하다. 그러면 이를 항목별로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 제 1 절 중화민국 대륙수복에 대한 미국의 태도와 그 대비책

미국은 중화민국과 1954.12.2 「미·중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하여 중화민국의 안전보장과 이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지속하여 왔다. 동 조약은 미국의 대중 군사정책과 중화민국의 대미정책이 일치되어 양국의 단결을 보여준 동맹으로써 미·중양국안전보장의 기반이 되고 있을뿐 아니라 서태평양 기지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즉 미·중상호방위 조약은 대내적으로는 중화민국의 방위에 실질적 초석일뿐 아니라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동남아 및 서태평양 지역의 지역적 안전보장의 초석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중화민국이 당면목표로하고 있는 대륙수복을 추진하는 정책과 이를 배반의 불일치를 발견한 난제에와 동 조약이 갖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즉 첫째로 미·중상호방위 조약 체계의 조약운영상에서 오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동 조약이 내포하고 있는 본질적 취약점으로는 무력침공을 제지하기 위한 「상호원조」와 무력행사를 하기위한 「사전협의 및 합의」의 내용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동 조약은 쌍방간의 협의와 합의가 선행되어야만 헌법 절차에 따라 무력행사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 점이다.

둘째로 미국이 미·중상호방위 조약에 의하여 대만의 방위를 책임지고 있으나 당면한 중화민국의 입장을 이해하려 함이 없이 「아시아는 아시아인이 해결」하게 한다는 대아시아 정책의 변화와 소련과의 새로운 사태의 초래가 모색 되기를 바라고 관망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점이다.

이는 요즈음 소련의 대아시아 외교공세에 대한 미국과 중화민국의 태도에서 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나 중화민국은 현 국제정세를 대륙수복의 호기로 보고 미국의 이해와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즉 그들의 국제정세 판단에서

1. 1970년 6월 미·일안보조약 기간이 만료됨으로 이에 따르는 정세가 대단히 유동적 상태이다. 2 |

2. 1971년까지 영국의 스웨즈 이동지역에서 조기철수 하게된다. 이는 아시아 제국의 자위력(自衛力)을 기대한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영국이 이지역에서 군사적 행동을 후퇴시킴으로써 앞으로 이 지역 반공태세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 틀림 없다.

3. 1972년까지는 중공이 IOBM(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되고 1972년~1975년에 가서는 세계에서 1급 핵부유의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

4. 1969년 8월에 NATO 기간이 만료되어 서구의 안전보장과 종래까지의 세력균형에 대하여 회의적이다.

5. 소련의 평화공전단계에서 소련은 미국을 적으로 돌리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 정책이 비록 용이하게 변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핵무기와 위성정쟁에서 앞서거나, 중공·소·미 삼각관계에서 미·중공관계 여하에 따라 종래의 평화정책을 포기할지도 모른다. 중

6. 중·쏘분쟁의 격화가 비록 공산집단과 민주진영간의 모순보다 심하다 하지만 만약 민주진영과 공산집단간의 모순이 중·쏘간의 모순보다 심각하여 질때는 수복에 극히 불리하게 될 것이라 판단한다.

7.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의 변화로 만약에 아시아에서 미국의 지상군이 완전히 철수하게 되는 날이면 공산세력의 침략방지가 불가능하다고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등 7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것 같다. 이와 반면에 미국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즉

1. 중화민국의 국력이 중공보다 뒤떨어져 있으며

2. 대륙광복을 위한 군사행동은 세계 핵전쟁을 일으킬 요소가 내포되어 있고

3. 대내외적으로 압력을 받고 있으며

국외는 영국, 불란서, 서독 및 일본등의 압력

국내에는 공산당 및 그 동조자의 압력

4. 미국의 전통적인 평화주의 사상

등의 이유로 비록 대륙광복의 유리한 여건이 성숙되어 있다 하더라도 미국은 군사적인 행동을 억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륙광복에 대한 미국의 소극적이면서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하여 중화민국은 앞에서 지적한 좋은 여건하에서도 수복이 늦어지고 있는 근본원인이 미·중상호방위조약에 있다고 보고 중화민국 정부는 군사행동시 미국의 군사개입 보다는 정신적인 지지와 물질적인 원조에 중점을 둔 법국민적인 대미외교를 전개하여 왔는가 하면 대내



의 인사들은 미·중상호방위조약의 폐기가 대륙수복의 계약요소를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중화민국이 현재 입장에서 소련이 제의한 아시아 집단안전보장체제의 형성을 당연한 것으로 보고 비공식적인 접촉을 시도하는 과감한 행동과 아시아 반공세력을 집결하려는 그들의 노력은 이러한 미·중사이의 상호 모순된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곧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 제 2절 소련의 대아시아 정책에 대한 중화민국의 자세

영국의 스웨즈 이동지역에서의 철수와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변화 가능성의 시사로 중공은 아시아에서 영국과 미국의 영향력을 대신하려 하고 있는가 하면 소련은 이러한 중공세력의 팽창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세계공산당대회에서 아주집단안전체제를<sup>제</sup> 정식으로 제의 하였으며 이와 내를 놓치지않고 이미 아시아에<sup>보장</sup> 대한 외교공세를 취하여 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소련의 이러한 공세에 대하여 아직 직접적인 접촉은 없으나 소련이 이미 대아시아의 계약을 위하여 직접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음을 시인하는 한편 이에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을 모색 모색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대응책에는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중공의 위협을 소련으로 하여금 견제케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그중에 하나가 될 것에 틀림없다. 이와 같은 사정은 중화민국 임부총통이 지난 7월 미국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이 소련으로는 동남아에서

중공세력을 축출할 가장 좋은 시기이며 소련의 아주집 단안보체제형성에 대한 행동은 극히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소련의 외교공세가 이미 인도양과 중국해협에 이르렀고, 중화민국도 평화를 사랑하나 평화를 해치는 장애물 제거를 위하여서는 강력한 태도를 취할 것이다」고 한 내용에서 엿볼 수 있다.

중공과 소련의 분쟁상태를 자유진영에게 이롭게 활용하는 방법으로서는

1. 소련으로 하여금 중공을 견제하는 방법
2. 중공으로 하여금 소련을 견제하는 방법
3. 소련과 중공과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유지 중·소의 분쟁을 관망하여 호기를 모색하는 방법

이상의 3가지를 고려할 수 있는데 중화민국은 이상 3가지 방법중에서 첫째 방법을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1. 서방국가가 중공과의 관계를 개선하면 할수록 중공과 소련의 전쟁가능성은 희박하여 질 것으로보고 있다. 그러므로 중화민국의 입장은 중공과 소련간의 적대행위 조성에 피동적인 자세로서 관망만 할 수는 없는 것이며
2. 장차 중국대륙에 있는 풍부한 인력 물자 및 재력을 소련수중에 넘겨줄 수는 없다.
3. 중화민국은 미국의 「협상과 비대항주의」에서 수복의 가능성을 찾기는 희박하며 새로운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4. 소련이 아시아지역에서의 중공세력을 축출하기 위한 능동적인

외교공세에 머리를 돌릴 필요는 없게 될 것이다.

동 4가지를 들 수 있다.

중화민국과 소련과의 관계는 비공개적이어서 지금 곧 단정을 내릴 수는 없으나 중화민국이 소련의 외교공세를 받아 드린다면 그 내용은 중공의 세력팽창의 견제를 비롯하여 자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차지하게 될 이해관계와 대륙수복을 위한 새로운 방안의 모색이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틀림이 없다.

### 제 3 절 아시아지역의 대공방위 체제 형성의 구상

중화민국은 소련이 중공의 고립화와 아시아에서 중공세력의 축출을 목적으로 하는 대아시아 외교공세를 바람직한 일로 보고 전절에서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소련과 비공식적이거나 접촉을 개시하고 있는 한편 아시아 반공국가의 단결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중화민국의 입장에서 고찰하면 「소련은 구주인이기 아주인은 아니다. 만약 소련이 이조직을 구성하게 되면 아주 국가의 일국으로서 아주의 영향력은 확대되고 아주에서의 발언권이 강화되어 아주는 소련의 경제적 침략을 받게 될 것이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므로 중화민국은 소련이 중공의 세력팽창을 막기 위한 한가지 수단으로서 아주집단안보체제의 형성을 주장하는 것은 자연적인 일이라는 하나 이는 장차 아주에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 분명하며 아주의 평화와 안전을 영구적으로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중공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아주의 반공국가

간의 군사동맹이 필요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주지역의 반공군사동맹체제는 중화민국이 그 필요성을 제일 먼저 주장한 바 있으나 그동안 허다한 객관적 내지 주관적인 장애요인으로 체제형성을 위한 활동이 중단되어 왔고 작년 태국 국무원 부원장이 아주 제국을 방문하였을 시 다시 이 문제를 드러 제안한 바 있으나 각국의 반응 역시 그리 열성적인 것이 못 되었다.

그러나 근래 월남전의 형세 돌변으로 동남아 조약기구와 그 기능은 마비되었고 그와 반면 중공세력의 증가와 소련의 대아시아 진출 정책으로 각국은 아주 반공군사동맹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적극적인 아닐지라도 사태를 관망하고 있는 듯 하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중화민국은 실력이 있고 반공에 대한 입장이 확고한 태국, 한국, 월남 등을 연합하여 아주반공군사동맹의 체결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뒷<sup>반</sup>침하는 사실로서 장경국특사의 한국방문과 태국방문에 이어 월남대통령의 한국방문과 중화민국 방문을 들 수 있다.

장경국은 공산주의 및 그들의 전략·전술에 대하여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중화민국의 실력자이다. 또 한국과 태국방문시 그를 수행한 수행원이 거의 군요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회담 주제는 양국의 군사협력 및 아주집단안전보장체제 형성에 관한 문제를 벗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월남이 어려운 일에 당면하여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여야 할 단계에 티우 대통령이 아주 우방 제국을 방문한 것은 월남사태에 대한 아주각국에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한편 월남전쟁의 새로운 형세에 대처하여 아주지역의 자유제국이 단결하여 공산침략에 대항 할

문제가 토의의 주제가 되었으리라고 보는 것은 그간의 사장이  
미루어 보아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